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83
----------	-------

발의연월일 : 2026. 8. 3.

발 의 자 : 최기상 · 김동아 · 이정문
정태호 · 권철승 · 이해식
김남준 · 김남근 · 김영환
이성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이른바 멀티메시지 전송은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헌재 2026. 4. 29. 2020헌바349등).

이에 위탁선거의 선거운동방법으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 전송도 할 수 있도록 하되,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5회 이내로 제한하고,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멀티메시지 전송에 따른 선거인의 불편과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을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발송 전화번호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66조제2항제5호 중 “제28조”를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전송횟수 제한을 위반한 자
2.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자

제68조제1항 중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73조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8조제1항제2호 후단을 위반하여 신고한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73조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

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관할위원회가 위탁신청을 받은
위탁선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u>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u>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u> <u>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u> <u>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u> <u>러하지 아니하다.</u> 1. (생 략) 2. <u>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u> <u>· 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u> <u>지를 전송하는 방법 <후단</u> <u>신설></u>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u>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u> <u>음)</u> 1. (현행과 같음) 2. <u>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u> <u>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u> <u>다)를-----.</u> <u>이 경</u> <u>우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u> <u>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메시지</u> <u>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u> <u>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u> <u>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u> <u>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u> <u>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u> <u>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u> <u>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u> <u>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u> <u>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u> <u>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u>

<u><신 설></u>	<u>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 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정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u> <u>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u> <u>2. 발송 전화번호</u> <u>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u>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u>제28조에 따른 통화방법</u> 또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28조제1항</u>-----

는 시간대를 위반하여 선거운
동을 한 자

6. ~ 13. (생략)

<신설>

제6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형사소송법」 제211조(현
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
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
으로서 제73조제4항에 따른 동
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6. ~ 13.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 동
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전
송횟수 제한을 위반한 자

2.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
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
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자

제6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제28조제1항제2호 후단을 위
반하여 신고한 전화번호가 아
닌 전화번호를 정당한 이유

<u><신 설></u>	<u>없이 사용하여 자동 동보통신</u> <u>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u> <u>송한 자</u>
② ~ ⑤ (생 략)	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 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 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 으로서 제73조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 ⑤ (현행과 같음)